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주택공간위원회 서준오 의원

○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!

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제4선거구 출신 서준오 위원입니다.

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

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
기반시설의 규모를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
신설하고, 모든 경미한 변경 사항을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

규정하는 것입니다.

- 이를 통해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로 이원화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권한을 자치구로 일괄 위임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변경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포함하여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조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.

-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!

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
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